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12. 1.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370호
-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제출일자 : 2025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25년 11월 4일

## II. 제안사유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함

## III. 주요내용

###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도 계획안(a)	2025년도 계획(b)	증 감 액(a-b)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3,442,030	21,731,154	1,710,876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4,185,137	357,439,983	26,745,15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80,123	450,735	29,38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0,435,183	976,907,700	△96,472,517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4,023,597	129,573,030	△125,549,433
합계	1,292,566,070	1,486,102,602	△193,536,532

## I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70호로 제출되어 2025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검토의견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 가. 기금 개관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52조<sup>1)</sup>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한 것으로,  
동 기금의 관리·운용은 같은 법 제54조제1항<sup>2)</sup>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학교안전공제회」)<sup>3)</sup>가 맡고 있음.

1)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3)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sup>4)</sup>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법 제8조<sup>5)</sup>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기금 총괄

- 202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8억 6백만원, 이자수입 1억 7천 6백만원, 기타수입 174억 6천만원 등 총 234억 4천 2백만원임.

그리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2억 4천 2백만원, 인력운영비 13억 7천 5백만원, 예치금 75억 1백만원, 기본경비 3억 2천 3백만원임.

[표-1]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6년 수입액 (A)	'25년 수입액 (B)	증 감 (C=A-B)	지출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 감 (C=A-B)
계	23,442,030	21,731,154	1,710,876	계	23,442,030	21,731,154	1,710,876
기타 지원금	-	3,272,000	△3,272,000	비융자성 사업비	14,242,473	14,295,479	△53,006
기부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융자금 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1,375,225	1,364,893	10,332
예치금 회수	5,806,444	3,521,074	2,285,370	예치금	7,501,074	5,806,444	1,694,630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자수입	175,907	167,800	8,107	기본경비	323,258	262,338	60,920
기 타	17,459,679	14,770,280	2,689,399	기 타	-	2,000	△2,000

## 다. 수입계획

- 2026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계획은 234억 4천 2백만원으로, 예치금회수 58억 6백만원, 이자수입 1억 7천 6백만원, 기타수입(공제료 수입 169억 5천 9백만원, 소방사업수익 2억 2천만원 등) 174억 6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217억 3천 1백만원) 보다 17억 1천 1백만원(7.9%)이 증가한 것임.
- 이와 같은 수입계획액 증가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32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금회수가 전년도(35억 2천 1백만원) 보다 22억 8천 5백만원(64.9%) 증가한 점과 교육부의 유·초·중·고 기준 공제료가 상승하여<sup>6)</sup> 기타수입이 26억 8천 9백만원(18.2%)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2]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천원)

항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23,442,030	21,731,154	1,710,876	7.9%
민간이전수입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용도 지원금	0	3,272,000	△3,272,000	△100.0%
예치금회수	소 계	5,806,444	3,521,074	2,285,370	64.9%
	사무국 임차보증금	248,348	248,348	0	0.0%
	학교안전공제사업 이월금	4,415,107	1,977,633	2,437,474	123.3%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이월금	57,117	83,007	△25,890	△31.2%

6) 예산 편성 시점에 「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료 산정기준 고시」 미발표됨에 따라 교육부 안을 바탕으로 편성함.

항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금	1,085,872	1,212,086	△126,214	△10.4%
이자수입	이자수입	175,907	167,800	8,107	4.8%
기타수입	소 계	17,459,679	14,770,280	2,689,399	18.2%
	공제료 수입	16,959,409	14,098,961	2,860,448	20.3%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60,422	79,904	△19,482	△24.4%
	(전입금)소방안전점검사업	220,000	220,000	0	0.0%
	(전입금)여행자동행공제사업	75,000	75,000	0	0.0%
	학교폭력피해구상금	113,348	263,915	△150,567	△57.1%
	법인세 환급금	26,500	26,500	0	0.0%
	잡수입	5,000	5,000	0	0.0%
	보조금반납금수입	0	1,000	△1,000	△100.0%

## 1) 민간이전수입

○ 동 수입액 중 민간이전수입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학생치료비를 위한 요양급여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2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는 동 기금의 고갈 우려로 민간 경상보조금 항목으로 32억 7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이와 같은 보조금이 미편성됨.

○ 이는 동 기금수지가 적자로 운영되면서 기금액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연초 공제료 지급을 위한 재원마저 부족한 상황이 예측되었는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한 이전수입이 발생했던 것임.

반면,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기금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6년에는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됨.

- 동 기금은 2년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총 58억 8천 6백만원의 기금 전입금 지원을 통해 기금수지가 개선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공제회는 기금잔액 관리 강화와 자체수익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3]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 (a)	교특 전입금	기부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b)	비용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2022	133,814	11,097	254	18,367	104,096	126,502	106,963	12,495	7,044	7,312
2023	8,488	-	-	244	8,244	12,267	10,610	1,450	207	△3,779
2024	11,998	<b>2,614</b>	-	145	9,239	12,008	10,806	1,003	199	△10
2025	18,210	<b>3,272</b>	-	168	14,770	15,925	14,296	1,365	262	2,285
2026	17,636	-	-	176	17,460	15,941	14,243	1,375	323	1,695
계	190,146	16,983	254	19,100	153,809	182,643	156,918	17,688	8,035	7,503

※ 조성액 및 집행액에서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2024년까지는 결산액 기준, 2025~2026년은 계획액 기준

## 2) 기타수입

- 기타수입은 ‘공제료 수입(유·초·중·고, 특수, 기타, 배움터 지킴이)’ 및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소방사업수익’, ‘여행자동행공제 사업 수익’, ‘학교폭력구상금 회수’ 등 공제회의 주된 수입원임.

이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타수입으로 총 174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147억 7천만원) 대비 18.2%(26억 8천 9백만원) 증가된 것으로 ‘공제료 수입(유·초·중·고, 특수, 기타, 배움터 지킴이)’ 이 28억 6천만원(20.3%)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 특히 ‘공제료 수입(유·초·중·고, 특수, 기타, 배움터 지킴이)’은 169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140억 9천 9백만원)보다 28억 6천 만원(20.3%)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이는 교육부의 공제료 산정기준에 대한 고시액의 인상안(평균 22.8%)을 적용하고 조정비율 30%를 반영하여 계상된 것임.
- 따라서 2026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별 공제료는 유치원이 7,410원으로 전년도(5,200원)보다 2,210원, 초등학교는 11,180원으로 전년도(9,100원) 보다 2,080원, 중학교는 29,250원으로 전년도(22,750원) 보다 6,500원, 고등학교는 32,890원으로 전년도(28,210원) 보다 4,680원 증액된 추계로 반영된 것임.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추계된 공제료 단가는 교육부에서 산정 기준을 고시했던 2025년의 경우<sup>7)</sup>와 달리 11월 현재까지 2026년 공제료 산정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교육부 결정에 따라 수입 계획액은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표-4] 교육부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sup>8)</sup>

(단위: 원)

구분	2025년 공제료	2026년 공제료(안)
유치원	4,000	5,700
초등학교	7,000	8,600
중학교	17,500	22,500
고등학교	21,700	25,300
가산율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u>30%</u> 이내 가감조정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u>30%</u> 이내 가감조정

7) 교육부고시(제2024-21호, 2024.10.18.), 「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료 산정기준 고시」

8) ‘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미고시된 상태로, 공제료 단가 유력안 및 조정비율 30%를 반영함.

[표-5]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표

(단위: 원,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평균
2025년	기준	4,000	7,000	17,500	21,700	12,900
	+30%	5,200	9,100	22,750	28,210	16,315
2026년	기준 (안)	5,700 (증 42.5%)	8,600 (증 22.9%)	22,500 (증 28.6%)	25,300 (증 16.6%)	15,900 (증 22.8%)
	+30%	7,410	11,180	29,250	32,890	20,700

※ 교육부 고시안(평균 22.8% 인상) + 시·도 공제료 평균 30% 인상분 적용

- 한편 공제료 수입을 위한 학생수 추계는 서울시교육청 ‘2025~2029학년도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2024~2028년 중기 교육 재정계획’(2023년 7월 발표)을 기반으로 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임.
- 이러한 학생수 추계 자료의 변경은 그동안 기금결산 심사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학생수 추계 방식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기준이 되는 근거를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보다 정확한 학생수 추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교육활동참여자<sup>9)</sup>’ 공제료는 전년도 8천만원보다 2천만원 ( $\triangle 24.4\%$ ) 감액 편성된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공제회는 2025년 동 수입액 5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2025년의 수입액 증가율 7.5%, 2026년 예상 물가 상승률 1.8%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sup>10)</sup>.
- 다음으로 ‘소방안전점검사업’에 따른 전입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9)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10)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2796번)[예방사업부-4935(2025.11.7.)]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소방안전점검사업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 수익사업으로서<sup>11)</sup>, 이를 통한 학교안전공제회의 2026년 수입은 28억 5천 5백만원으로 2025년 25억 4천 2백만원에 비해 3억 1천 3백만원(12.3%) 증가함.
-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사업을 별도 회계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음.

[표-6] 소방시설안전점검사업 수입지출내역

(단위: 천원)

회계 연도	계약 학교 수	전년도 이월액 (A)	수입 (B)	지출				수지차 (D=B-C)	다음연도 이월액 (E=A+D)
				전출금	운영비	인건비	계(C)		
2017	408	96,323	1,070,440	120,000	320,580	577,408	1,017,988	52,452	148,775
2018	476	148,775	1,262,084	120,000	392,758	744,595	1,257,353	4,731	153,506
2019	534	153,506	1,498,646	120,000	379,777	820,397	1,320,174	178,472	331,978
2020	577	331,978	1,658,565	160,000	394,221	939,070	1,493,291	165,274	497,252
2021	592	497,252	1,748,672	271,000	393,442	969,935	1,634,377	114,295	611,547
2022	611	611,547	1,847,735	160,000	419,836	1,063,511	1,643,347	204,388	815,935
2023	620	815,940	2,042,180	500,000	523,907	1,230,961	2,254,868	-212,688	603,252
2024	597	686,130	2,247,500	200,000	559,670	1,303,160	2,062,830	184,670	870,800
2025	547	1,144,866	2,541,666	220,000	650,441	1,406,309	2,276,750	264,916	1,409,782
2026	(미정)	1,409,782	2,855,100	220,000	647,450	1,574,364	2,441,814	413,286	1,823,068

- 그동안 동 사업은 2023년 전출금 5억원 편성으로 일시적인 적자(수지차 △2억 1천만원)를 기록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매년 수입이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출을 상회하는 구조를 유지함.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4년 8억 7천만원, 2025년 14억 1천만원, 2026년 18억 2천 3백만원으로 평균 45.6%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동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024년 2억원에서 2025년 2천만원 증가한 2억 2천만원이었으며, 2026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천만원만 편성하였음.

- 한편 공제회는 소방사업 이외에 ‘여행자동행공제사업’에서도 수입 일부를 공제기금으로 전출하고 있는바,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2026년에 이월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월금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과 동일한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7] 최근 2년간('25~'26년) 여행자동행공제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수 입					지 출					이월금 (예치금)	전출금
	공제료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이월금	소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소계			
2025	예산액	487,200	8,100	200	393,341	888,841	122,564	188,418	57,564	368,546	445,295	75,000
	비율	54.8	0.9	0.0	44.3	100	33.3	51.1	15.6	100	-	-
2026	예산액	459,200	7,500	100	445,295	912,095	136,630	136,536	56,574	329,740	507,355	75,000
	비율	50.4	0.8	0.0	48.8	100	41.4	41.4	17.2	100	-	-

※ 2026년도 예산은 이사회 심의 전이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이처럼 두 사업 모두 공제회 기금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이월액을 지속적으로 누적하고 전출금 규모는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는바, 기금 재원 조성·활용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익규모에 비례한 전출금 증액 등 합리적 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3) 예치금회수

- ‘예치금 회수’는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2026년도 수입액 58억 6백만원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35억 2천 1백만원) 대비 22억 8천 5백만원(64.9%)이 증가한 규모임.

[표-8] 예치금회수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항목	‘26년 수입액	‘25년 수입액	증감액	증감률
예치금회수	5,806,444	3,521,074	2,285,370	64.9%

### 라. 지출계획

- 2026년도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공제사업 137억 3천 2백만원, 예방사업 2억 7천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천 9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 청구권 행사 2억 2천 2백만원, 재무활동 75억 1백만원, 기관운영비 3억 2천 3백만원, 인건비 13억 7천 5백만원 등 총 234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것은 2025년(217억 3천 1백만원) 대비 17억 1천 1백만원(7.9%)이 증가된 것임.

- 이처럼 지출계획의 주된 증액 사유는 공제사업 지출이 전년도(136억 9백만원)보다 1억 2천 3백만원(0.9%)이 증가하고, 보유준비금이 전년도(46억 6천 3백만원)보다 18억 5백만원(38.7%)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 [표-9] 2026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 감	
				증감액 (A-B)	증감률
학교 안전망 구축	공제 사업	공제급여 지급	13,345,000	13,181,200	163,800 1.2%
		심사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	39,480	37,750	1,730 4.6%
		보상심사위원회	21,500	21,500	- 0.0%
		소송업무 수행	240,360	263,450	△23,090 △8.8%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등 비용지원	25,500	25,500	- 0.0%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60,000	60,000	- 0.0%
		중앙회 분담금	0	19,200	△19,200 △100.0%
		학교안전사고 보상 관련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개선	0	19,200	△19,200 △100.0%
		소계	13,731,840	13,608,600	123,240 0.9%
	예방사업	270,023	239,060	30,963 13.0%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9,090	28,690	△9,600 △33.5%	
	학교폭력피해지원 및 상환 청구권 행사	221,520	419,129	△197,609 △47.1%	
교육 일반	재무 활동	보유준비금	6,468,417	4,663,455	1,804,962 38.7%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지원예치금	39,663	57,117	△17,454 △30.6%
		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	992,994	1,085,872	△92,878 △8.6%
		소 계	7,501,074	5,806,444	1,694,630 29.2%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5,360	25,360	- 0.0%
		운영비	297,898	236,978	60,920 25.7%
		소 계	323,258	262,338	60,920 23.2%
예비비	예비비	0	2,000	△2,000	△100.0%
인건비	인건비	1,375,225	1,364,893	10,332	0.8%
계		23,442,030	21,731,154	1,710,876	7.9%

## 1) 공제사업

- ‘공제사업’은 학생 등 피공제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제사업 총 지출액(137억 3천 2백만원)의 97.2%는 ‘공제급여 지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공제급여 지급’(133억 4천 5백만원)은 전년도(131억 8천 1백만원) 보다 1억 6천 4백만원(1.2%)이 증가한 규모임.

[표-10] ‘공제사업’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감(C=A-B)
공제사업	공제급여 지급	13,345,000	13,181,200
	심사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위탁	39,480	37,750
	보상심사위원회	21,500	21,500
	소송업무 수행	240,360	263,450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등 비용 지원	25,500	25,500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60,000	60,000
	중앙회 분담금	0	19,200
	학교안전사고 보상 관련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개선	0	19,200
계	13,731,840	13,608,600	123,240

- 이처럼 동 사업의 지출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공제급여 지급 중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요양급여의 증가와 장해급여 중 직접청구 가 증가되었기 때문임.

## [표-11] '공제급여 지급' 지출 계획

(단위: 천원, %)

항목		산출기초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증감률	
공 제 사 업	공제 급여 지급	요양급여	424,000원×22,100건	9,370,400	9,297,400	73,000	0.8
		장해급여		3,288,600	3,197,800	90,800	2.8
		1)직접청구	176,280,000원×11건	1,939,080	1,500,000	439,080	29.3
		2)소송청구	112,460,000원×12건	1,349,520	1,697,800	△348,280	-20.5
		간병급여	16,000,000원×1건	16,000	16,000	-	
		유족급여	630,000,000원×1건	630,000	630,000	-	
		위로금	40,000,000원×1건	40,000	40,000	-	
		계	13,345,000	13,181,200	163,800	1.2%	

- 먼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3개년 평균 요양급여 지급건수 및 건당 청구금액에 증감률과 지급률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전년 대비 7천 3백만원을 증액한 93억 7천만원이 편성됨.
- 또한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장해가 발생한 때에 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위자료로,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3개년의 증가추세를 고려해 전년 대비 9천 1백만원 증액된 32억 8천 9백원이 편성됨.
- 전반적으로는 공제사업은 전년 대비 소폭(1.2%) 증가하여, 공제급여 지급 사업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준의 변동으로 보임. 다만 향후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의 추이가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표-12] 요양 및 장해급여 지급 현황

### ▶ 요양급여

(단위: 건, 원)

구분	사고 건수		지급건수		건당 청구금액		건당 지급금액		지급률 (B/A)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금액(A)	증감률	금액(B)	증감률		
2023년	31,189	-	19,969	-	404,177	-	325,730	-	80.6%	
2024년	33,207	6.5%	21,892	9.6%	463,571	14.7%	362,551	11.3%	78.2%	
2025년	8월말	19,807	-	14,422	-	525,573	-	419,239	-	79.8%
	연도말 (예상)	29,711	-10.5%	21,633	-1.2%	525,573	13.4%	419,239	15.6%	79.8%
3개년 평균	31,369	-2.0%	21,165	4.2%	464,440	14.1%	369,173	13.5%	79.5%	

### ▶ 장해급여

(단위: 건, 천원)

구분	직접 청구					소송 청구				
	청구 건수	지급건수		건당 지급금액		건수		건당 지급금액		
		건수	증감률	금액	증감률	건수	증감률	건수	증감률	
2023년	21	7	-	104,611	-	15	-	132,469	-	
2024년	16	8	14.3%	126,967	21.4%	6	-60.0%	105,540	-20.3%	
2025년	8월말	13	7	-	175,533	-	1	-	146,370	-
	연도말 (예상)	20	11	37.5%	175,533	38.3%	11	83.3%	116,757	10.6%
3개년 평균	19	9	25.9%	135,704	29.9%	11	11.7%	118,255	-4.9%	

## 2) 예방사업

- 예방사업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2억 3천 9백만원)보다 3천 1백만원(13.0%) 증가한 2억 7천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5천 2백만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수 및 행사 운영’에 8천 5백만원,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 연구에 3천 3백만원, 빅데이터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2천 3백만원,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에 1천 8백만원, 학교안전 공제 안내 등 사업별 홍보에 9백만원, 학교안전컨설팅 운영에 2천 만원, 예방사업 및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에 3천만원을 편성함.

[표-13] 예방사업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증감률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검토 및 회의수당 등	1,000	1,000	-	0.0%
	콘텐츠 제작(섭외, 용역 등)	50,000	37,000	13,000	35.1%
	<b>업무협의회비</b>	<b>600</b>	<b>200</b>	<b>400</b>	<b>200.0%</b>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수 및 행사 운영	교직원 집합연수 운영	4,113	42,400	△38,287	-90.3%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운영	40,000	-	40,000	순증
	행사 물품 제작	8,000	28,060	△20,060	-71.5%
	행사 용역 운영	32,000	-	32,000	순증
	<b>업무협의회비</b>	<b>600</b>	<b>-</b>	<b>600</b>	<b>순증</b>
	강사료	-	5,400	△5,400	-100.0%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 연구	위탁연구비	20,000	20,000	-	0.0%
	연구자료 활용 및 홍보	13,000	3,000	10,000	333.3%
	<b>업무협의회비</b>	<b>360</b>	<b>-</b>	<b>360</b>	<b>순증</b>
빅데이터 기반 학교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	카드뉴스	22,000	20,000	2,000	10.0%
	전문가 자문·감수	1,000	-	1,000	순증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심사수당	1,000	800	200	25.0%
	시상금	10,000	8,000	2,000	25.0%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7,000	6,000	1,000	16.7%
	<b>업무협의회비</b>	<b>150</b>	<b>-</b>	<b>150</b>	<b>순증</b>
학교안전공제 안내 등 사업별 홍보	홍보물품 제작·배포	5,000	5,000	-	0.0%
	언론홍보	2,200	2,200	-	0.0%
	기관 사업 홍보	2,000	12,000	△10,000	-83.3%
학교안전컨설팅 운영	컨설팅 위탁용역	20,000	18,000	2,000	11.1%
‘예방사업 및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	30,000	30,000	-	0.0%
<b>합 계</b>		<b>270,023</b>	<b>239,060</b>	<b>8,593</b>	<b>13.0%</b>

- 주요 증감 사업의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사고에 관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콘텐츠 제작비가 1천 3백만원(35.1%) 증가함.

- 동 사업의 증액 사유는 콘텐츠 제작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됨. 다만, 최근 제작된 콘텐츠의 조회수가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콘텐츠 양만을 늘리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바 적절한 홍보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14] 최근 2년간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내역 및 조회수

연도	대상	사업명	조회수 (12)	제작시기	탑재처
2024	유·초·중학생	유치원 등하원 사고 예방 애니메이션	514	2025.1.6.	유튜브
		초등학교 등하고 사고 예방 애니메이션	2,100		
		낙하물 사고 예방 애니메이션	529		
		쉬는시간 안전사고 예방 애니메이션	765		
		미약 및 중독성 물질 오남용 예방 애니메이션	1,100		
2025	학부모	유치원 학부모 안전교육 영상	180	2025.11.3.	유튜브
		초등학교 학부모 안전교육 영상	106		
		중학교 학부모 안전교육 영상	121		
		고등학교 학부모 안전교육 영상	172		

-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수 및 행사 운영’ 사업은 기존에는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sup>13)</sup> 교직원 대상 실습·사례 중심 15차시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었으나, 교직원 연수와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전문화 확산 행사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조정 및 확대 편성하면서 9백만원(11.7%) 증액 편성됨.
-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 연구’ 사업은 특이 사례 및 중대 사고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며 신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연구 활용 및 홍보를 위한 예산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함.

12) 유튜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업로드된 영상 확인 : 기준일 2025.11.13.

13)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한편 ‘학교안전공제 안내 등 사업별 홍보’의 기관 사업 홍보 예산은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하여 실효성이 높은 예방사업으로 재배분 하겠다는 계획인바, 양 사업 간 증감분은 상계되는 것으로 보임.
- 이외 전반적인 사업 편성은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해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공제사업 및 예방사업 등 사업예산의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편성된 업무추진비(보상심사위원회,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자문위원회 관련)를 제외하고는 전액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것으로 전년 대비 3백만원(61.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교육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며 증액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처럼 각 세부사업별로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한 편성 방식을 통해 전년 대비 61.6%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15] 업무추진비 편성 및 증액내역(기관운영비 제외)

(단위: 천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사업내역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B)	증감(B-A)	증감률
학생 생활 지도	공제사업		3,000	4,200	1,200	40.0%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3,000	3,000	-	-
		심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우탁심사 및 자문	-	600	600	순증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 수행	-	600	600	순증
	예방사업		200	1,710	1,510	755.0%
		학교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200	600	400	200.0%
		학교안전사고 예방 연수 및 행사 운영	-	600	600	순증
		학교안전사고 조사·분석 연구	-	360	360	순증
		학교안전문화 확산 공모전	-	150	150	순증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1,200	1,200	-	-
	합계		4,400	7,110	2,710	61.6%

### 3)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sup>14)</sup>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2천 9백만원) 대비 1천만원 감액한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6]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증감률 (C/B)
상담및심리치료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비	9,600	19,200	△9,600	50.0%
상담자문위원회 운영 연수 및 행사 운영	가. 참석수당	5,600	5,600	-	0.0%
	나. 회의경비	1,200	1,200	-	0.0%
	다. 위원회 운영비	1,200	1,200	-	0.0%
자문료	의료·법률 자문료	990	990	-	0.0%
상담지원제도 홍보	상담지원제도 홍보	500	500	-	0.0%
<b>합 계</b>		<b>19,090</b>	<b>28,690</b>	<b>△9,600</b>	<b>△33.5%</b>

- 이는 ‘상담 및 심리치료비’가 전년도 1천 9백만원 대비 1천만원 감액(50%)됨에 따른 것으로, 2025년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급 금액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76.0%)한 점과 연도별 평균치를 감안해 산출된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14)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표-17]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지출계획	지급건수(건)	지급금액 (천원)	지급건수 증감율	지급금액 증감률
2022년	12,000	17	15,600	-	-
2023년	16,000	6	10,864	-64.7	-30.4
2024년	19,200	8	15,714	33.3	44.6
2025년(연도말 예상)	19,200	4	3,764	-50.0	-76.0
2026년(예산)	9,600	6	9,600	50.0	155.0

#### 4)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청구권 행사

-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청구권 행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을 공제회가 우선 지원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4억 1천 9백만원) 대비 1억 9천 8백만원( $\triangle 47.1\%$ ) 감액한 2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함.

[표-18]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상환청구권 행사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증감률 (C/B)*100
학교폭력 피해지원	가. 심리상담비	118,000	239,181	$\triangle 121,181$
	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72,500	148,928	$\triangle 76,428$
구상권 행사경비	소송 및 집행비용	26,400	26,400	-
자문료	의료·법률 자문료	4,620	4,620	-
합계	221,520	419,129	$\triangle 197,609$	-47.1%

- 우선 '심리상담비'의 경우 2024년 1억 4천 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 연말 기준 1억 1천 2백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어 당초 지출계획 대비 3천 3백만원(2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50.7% 감액한 1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 [표-19] '학교폭력 심리상담비'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

연도	지출계획	지급건수(건)	지급금액 (천원)	지급건수 증감률	지급금액 증감률
2022년	144,000	109	84,680	-	-
2023년	180,000	186	170,116	70.6	100.9
2024년	260,000	133	144,799	-28.5	-14.9
2025년(연도말 예상)	<b>239,181</b>	<b>98</b>	<b>111,960</b>	<b>-26.3</b>	<b>-22.7</b>
2026년(예산)	118,000	100	118,000	2.0	5.4

- 또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항목은 2024년 6천 3백만원에서 2025년 연말 기준 6천 6백만원으로 3백만원(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 지출계획 대비 실제 지급금액간의 차이가 높게 발생하고 있는바, 금년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 47.1% 감액한 7천 3백만원을 편성함.

### [표-20] '학교폭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지출계획	지급건수(건)	지급금액 (천원)	지급건수 증감률	지급금액 증감률
2022년	80,000	59	90,959	-	-
2023년	141,394	55	139,113	-6.8	52.9
2024년	226,840	40	63,218	-27.3	-54.6
2025년(연도말 예상)	<b>148,928</b>	<b>23</b>	<b>65,928</b>	<b>-42.5</b>	<b>4.3</b>
2026년(예산)	72,500	25	72,500	8.7	10.0

- 두 항목 모두 2025년 예상 지급금액 대비 10% 이내로 금년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 금액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2025년 지출계획 대비 연말 지출 예상금액이 각각 46.8%, 44.3%로 계획과 지급금액 사이에 큰 편차가 발생한바, 정교한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임.

## 5) 예치금

[표-21] '예치금'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증감률 (C/B)
보유준비금	가. 보유준비금	6,220,069	4,415,107	1,804,962	40.9%
	나. 임차보증금	248,348	248,348	-	0.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예치금		39,663	57,117	△17,454	△30.6%
학교폭력피해지원금예치금		992,994	1,085,872	△92,878	△8.6%
합계		7,501,074	5,806,444	1,694,630	29.2%

- 동 기금의 예치금은 75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58억 6백만원) 보다 16억 9천 5백만원이 증액(29.2%)되었고, 이는 공제료 고시액 인상 및 예치금 회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에 그치면서 보유적립금 적립이 증가한 것임.

금년도에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기금 전입금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보유준비금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점은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료됨.

[표-22] 최근 5년 보유준비금 적립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2026년 (계획)
보유준비금	8,471	7,311	3,532	3,522	5,806	7,501

## 6)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표-23]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증감률 (C/B)
기관 운영비	가. 업무추진비	25,360	25,360	-	-
	나. 운영비	297,898	236,978	60,920	25.7
	소 계	<b>323,258</b>	<b>262,338</b>	<b>60,920</b>	<b>23.2</b>
인건비	보수(월급여)*	992,207	976,685	15,522	1.6
	수당	261,343	267,334	△5,991	
	4대보험	121,675	120,874	801	0.7
	소 계	<b>1,375,225</b>	<b>1,364,893</b>	<b>10,332</b>	<b>0.8</b>

\*보수(월급여): 기본급+정근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정근가산금+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 등

- '기관운영비'는 전년도 2억 6천 2백만원 대비 6천만원(23.2%) 증가한 3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전년도(13억 6천 5백만원) 대비 1천만원(0.8%)이 증가한 13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됨.
- 이 중 '운영비'는 일반수용비(9백만원),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1천 9백만원), 임차료(2천 6백만원), 복리후생비(6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표-24] '운영비' 중 주요 증액항목

(단위: 천원)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1. 일반수용비	가. 사무용품 구입비	19,200	19,200	-
	나. 행사 및 워크숍	<b>10,200</b>	<b>6,800</b>	<b>3,400</b>
	다. 인쇄물 및 유인물	2,400	2,400	-
	라. 등기비용, 전자금융	1,200	1,200	-
	마. 간행물 등 구입비	1,200	1,200	-
	바. 세무기장수수료	6,000	6,000	-
	사. 노무(월정)자문료	3,960	3,960	-
	아. 전산화기기유지보수(백신프로그램구입)	400	400	-

항목	'26년 지출액 (A)	'25년 지출액 (B)	증감 (C=A-B)
자. 신문구독료 차. 사무실청소 카. 직원교육훈련비 타. 시도공제회 회의 참가 경비 파. 기타일반수용비	1,200	1,200	-
	2,400	2,400	-
	8,400	8,400	-
	4,200	2,500	1,700
	<b>3,600</b>	-	<b>3,600</b>
2.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가. 홈페이지 고도화 등 유지보수	3,600	-
	나. 클라우드서버 사용료	12,000	-
	다. 콜센터 유지보수	3,600	-
6. 임차료	가. 사무실 임차료	32,400	21,600
	나. 사무실 관리비	45,600	31,200
	다. 복합기	4,320	4,320
	라. 공기청정기, 정수기	2,700	2,280
7. 복리후생비	가. 맞춤형 복지비	28,800	24,780
	나. 동호회 지원비	<b>1,680</b>	<b>140</b>
	다. 기타복리후생비	6,700	6,700

- 특히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증액은 예산항목 변경(공제사업비 →운영비)으로 인한 것이며, 임차료 증액은 사업 확대로 직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을 확충( $129\text{m}^2$ )함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는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일반수용비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 금년도부터 공제기금 적립금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고는 하나 교육청에서 최근 2년간 58억 8천 6백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등의 기금 건전성 문제에도 행사 및 워크숍(3백만원), 동호회 지원비(2백만원)<sup>15)</sup> 등의 직원 외유성 경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임.
- 또한, 기타일반수용비(4백만원)와 같이 예산편성기준상 구체 항목을 특정하지 않고 ‘기타’ 항목으로 포괄 계상하는 방식은 예산의 투명성·

15) [요구자료 2796번] 공제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직원 간 소통 확대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동호회지원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동호회지원비 증액이 내부통제에 대한 비전으로 연결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2. 신임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선발을 앞두고 있는 바 직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내부통제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것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는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외 인건비는 급여 증액분과 내부 인력의 직급 조정으로 인한 감액이 상계되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된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표-25]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6년 수입액(a)	'25년 수입액(b)	증감 (c=a-b)	지출항목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감 (c=a-b)
합 계	384,185,137	357,439,983	26,745,154	합 계	384,185,137	357,439,983	26,745,154
예 치 금 회 수	357,439,983	357,439,983	-	예 치 금	104,185,137	357,439,983	△253,254,846
이 자 수 입	26,745,154	-	26,745,154	전 출 금	280,000,000	-	280,000,000

#### 가. 수입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서울시 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6조제7항<sup>16)</sup>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법정기금임.
- 동 기금의 2026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574억 4천만원, 이자수입 267억 4천 5백만원을 포함한 3,841억 8천 5백만원으로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구성되어 있는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별도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기에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에서 예치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번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만 반영되어 있음.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이자수입은 267억 4천 5백만원으로 순증하는 것으로 편성됨.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동 기금의 만기가 된 계좌를 금리 상향 시 해지 후 재예치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정기예금 금리가 기가입된 정기예금 예치금리보다 높지 않아 종전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였는 바<sup>17)</sup>,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운용계획의 이자수입 253억 4천 4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기 때문임<sup>18)</sup>.

[표-26] 2025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천원)

구분	변경계획(A)	당초계획(B)	증감(A-B)	변경사유
계	357,439,983	382,784,263	△25,344,280	
교특전입금	-	-	-	
이자수입	-	25,344,280	△25,344,280	(감) 기가입한 정기예금 유지에 따라 이자수입 미발생
예치금회수	357,439,983	357,439,983	-	

17) 서울시교육청 금고업무 약정서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의 금리는 예치 당시 약정 금리를 따르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동 기금에 보유한 예금의 약정일은 모두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금리는 3.67%~3.77% 수준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별표1] 예금에 대한 금리 (금고 약정서 제6조 관련)

\* 금리적용방법

1. ~ 3. 생략

4. 2024. 12. 31. 이전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의 해지시까지의 금리는 예치 당시의 약정금리를 따름.

18)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025.10.).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아울러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sup>19)</sup>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바, 2025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예치금)의 변경률은 6.6%로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음.

#### [표-27] 2025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천원)

구분	변경계획(A)	당초계획(B)	증감(A-B)	변경사유
계	357,439,983	382,784,263	△25,344,280	
비용자성 사업비	-	-	-	
예치금	357,439,983	382,784,263	△25,344,280	(감) 수입계획(이자수입) 변경에 따 른 예치금 조정

- 한편 동 기금의 예치는 세 개 계좌로 운영되고, 2026년도에 동 기금에서 2천 8백억원을 전출할 계획에 따라 세 개 계좌 중 두 개 계좌를 해지하면서 이자가 267억 4천 5백만원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이자수입 계상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표-28] 2026년도 이자수입 현황

(단위: 천원, %, 일)

연번	예치금액	예치일	예치금리	발생이자
1	9,864	2024-12-26	3.77%	유지
2	203,117,834	2024-07-04	3.67%	15,480,695
3	154,312,285	2024-08-05	3.67%	11,264,459
합계	357,439,983			26,745,154

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 2023.7.10.][법률 제19430호, 2023.6.9., 타법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생략

-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인건비 증가 등 세출 증가에 비해 세수 감소 등으로 세입이 충분하지 않는바, 현재의 추세로는 동 기금으로의 전입금보다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의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동 기금의 수입 재원은 이자 수입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은 계좌 해지 후 2026년도에 새로 예치하는 예금의 경우 변경된 「서울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2025년~2028년)」에 따라 「COF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상시 점검하여 기금 이자 수입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나. 지출계획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800 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동 기금의 설치목적은 교육비특별회계 등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안정화기금은 동 조항 각호<sup>20)</sup>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할 수 있음.

---

20)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이와 관련하여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규모와 교육비특별회계 과거 3년 세입 재원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총 규모는 10조 6,622억 7백만원<sup>21)</sup>으로 본예산 기준 과거 3년 세입 재원 평균 금액(11조 6,182억 4천 3백만원)보다 감액( $\triangle 9,560$ 억 3천 6백만 원)되었는바,

이는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 제4조제3항제1호(‘해당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금 사용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동 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8조<sup>22)</sup>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sup>23)</sup>되었는바, 동 계획안 지출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표-29] 교육비특별회계 과거 3년 세입 재원 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2025년 평균(A)	2026년* (B)	(B-A)
본예산액	12,891,521	11,160,536	10,802,672	11,618,243	10,662,207	$\triangle 956,036$

\* 2026년 세입액: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액 기준, 단 기금전입금 2,800억원 제외

21)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10조 9,422억 7백만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800억원 제외한 금액.

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략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498(2025.10.13.). 2025년 제3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한편 해당 기금의 사용 조건과 범위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4조제3항<sup>24)</sup>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동 기금의 적립금을 살펴보면 2025년도 말 기준 적립액은 3,574억 4천만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2,800억원으로 적립액(3,574억 4천만원)의 78.3% 수준인바, 조례 규정상 전출 규모에는 별도 문제가 없음.

### [표-30] 교육비특별회계 과거 3년 세입 재원 평균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말 기준 적립액	적립금 총액의 80% 금액	기금전입금
금 액	357,440	285,951	280,000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3,300억원을 전출한바 있는데 당시 기금 전출을 위해 계상한 ‘과거 3년 세입 재원’의 산출은 금번 계획안과 달리 본예산액이 아닌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음.<sup>25)</sup>
- 이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사용요건<sup>26)</sup>이 단지 ‘과거 3년 평균

24)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 4. 생략

25) 2024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위한 세입재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3년 평균(A)	2024** (B)	(B-A)
세입 결산액	12,202,397	14,738,178	12,813,617	13,251,397	10,830,536	△2,420,861

\* 2023년 세입액: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의 2023년도 세입 전망액

\*\* 2024년 세입액: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액 기준, 단, 기금전입금 3,300억원 제외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회(2023.11.2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5페이지.

26)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 생략

‘세입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세입 금액이 본예산 기준인지 결산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시 ‘과거 3년 세입 재원’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적<sup>27)</sup>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현 시점까지 조례 개정을 시행하지 않은 것임.
- 동 기금에서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감소 등으로 향후에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 설치·운용의 법적 기반인 해당 조례의 지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2023.11.22.). 2024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5~26페이지.

## 생태전환교육기금

### 가. 기금 개관

-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등에게 시행하는 생태전환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2021년 신설되었음.
- 동 기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취지로 2022년 10억원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되었음.

그러나 동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이라는 단일 사업에만 지출되고, ‘농촌유학’ 예산이 본예산과 기금에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등 부적정한 기금운용의 문제가 지적<sup>28)</sup>되면서 2023년 동 기금의 폐지가 추진되었음.

- 2023년 5월 3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6일 집행기관에 이송되었음.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 폐지안에 폐지 후에도 기존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있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음.

28)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관한 주요 지적사항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22.11.29.), 202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46-51쪽;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23.7.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등 참조.

- 이에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결로 동 조례안을 확정 및 공포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동 폐지 조례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표-31]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추진 개요**

일자	주요 내용
2023. 5.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06호)
2023. 6.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회부 및 입법예고 진행
2023. 7. 3.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2023. 7. 5.	조례안 본회의 심사·의결
2023. 7. 6.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7. 26.	조례안 재의 요구 (교육청 → 시의회)
2023. 9. 15.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재의결
2023. 9. 18.	확정조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9. 27.	폐지조례 의장 공포
2023. 10. 4.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 (재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2023. 10. 17.	대법원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 나. 수입 계획

-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4억 5천 1백만원과 이자 수입 2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총 4억 8천만원임.
- 이 중 이자수입은 2025년도 미실현 이자액 1천 4백만원<sup>29)</sup>과 당해 연도 이자수입 1천 5백만원을 합산 계상한 것임.

29)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2815번 생태전환기금 운용현황(2025.11.10.)

-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인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기준 금리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도에 해지 보류함으로써 정기예금 수신 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임.<sup>30)</sup>
- 따라서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제12조 제1항<sup>31)</sup>에 따른 기금운용 수입금 등에 해당하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표-32]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5년도 말 조성액(a)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 말 조성액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생태전환 교육기금	450,735	29,388	-	480,123	-	480,123

### 다. 지출 계획

-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되는바, 2026년도말 4억 8천만원임. 이는 동 기금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임.
- 다만, 동 기금의 존속기한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연도인 2021년으로부터 5년

30) 2024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의 개정(25.10.10)으로 기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던 것이 KOPIX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2025년 1월 신규 정기예금부터 적용  
단,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위 취급 약정서가 적용되는 2025년 1월 신규 예금이 아니라 기존 예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에 따른 금리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약정과 같이 해지 후 4개월 시점까지 해당 예금의 약정 이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됨.

3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후인 2026년 7월 21일까지인바<sup>32)</sup>, 동 조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금을 폐지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 될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표-33] 중기 기금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증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신청사 건립 기금	4,024	-	-	-	-	△100	폐지	2027.12.31.	
생태전환교육기금	480	-	-	-	-	△100	폐지	2026.7.21.	

\*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32) 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가. 기금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교육시설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과 「지방기금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임.
  - 교육시설기금은 「교육시설법」 제31조에<sup>33)</sup>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기금에 해당함.
- 이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8조와<sup>34)</sup> 같은법 제13조<sup>35)</sup> 등에 따라 2026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sup>36)</sup> 제출된 것임.
-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교육시설기금의 규모는 8,682억 6천 4백만원이고, 2026년말 동 기금의 예상조성액은 2,345억 6백만원으로, 6,459억 2천 9백만원이 감소할 예정임.

33)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34) 「지방기금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35)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3. (생략)

36) 2025년 제3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 위원회-9, 2025.10.17.)

- 구체적으로 2026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682억 6천 4백만원과 이자수입 121억 7천 2백만원 등 총 8,804억 3천 5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459억 2천 9백만원과 예치금 2,345억 6백만원 등 총 8,804억 3천 5백만원임.

#### [표-34]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25년도 말 조성액(a)	'26년도 기금운용계획		'26년도 말 조성액 (d=a+b-c)	용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868,263,523	12,171,660	645,929,196	234,505,987	-	234,505,987

#### [표-35] 기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6년 수입액(A)	'25년 수입액(B)	증 감 (C=A-B)	지출항목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 감 (C=A-B)
합 계	880,435,183	976,907,700	△96,472,517	합 계	880,435,183	976,907,700	△96,472,517
교특회계 전입금	-	-	-	기관운영 (비융자성 사업비)	645,929,196	108,642,177	537,287,019
예치금 회수	868,263,523	945,961,961	△77,698,438	재무활동 (예치금)	234,505,987	868,263,523	△633,757,536
이자수입	12,171,660	30,945,739	△18,774,079	기본경비	-	2,000	△2,000

#### 나. 수입계획

- 2026년도 교육시설기금의 수입계획은 8,804억 3천 5백만원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에 따른 수입액 8,682억 6천 4백만원과 이자수입 121억 7천 2백만원을 합한 것임.
- 참고로 동 기금은 2026회계연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음.

### [표-36] 2026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6년 수입액(A)	'25년 수입액(B)	증감 (C=A-B)
[20000]	자체수입			12,171,660	30,945,739	△18,774,079
	[24000]	이자수입		12,171,660	30,945,739	△18,774,079
		[24100]	이자수입	12,171,660	30,945,739	△18,774,079
			[24101]예금이자수입	12,171,660	30,945,739	△18,774,079
[40000]	기타			868,263,523	945,961,961	△77,698,438
	[42000]	예치금회수		868,263,523	945,961,961	△77,698,438
		[42100]	예치금회수	868,263,523	945,961,961	△77,698,438
			[42101]예치금회수	868,263,523	945,961,961	△77,698,438
			수입 합계	880,435,183	976,907,700	△96,472,517

- 이 중 “예치금회수”는 2025년 말을 기준으로 동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을 2026년 중 기금 집행 및 금융상품의 만기 도래 등의 사유로 회수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776억 9천 8백만원 감소한 8,682억 6천 4백만원임.
- 또한,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187억 7천 4백만원 감액된 121억 7천 2백만원으로, 2026년 중 기금 조성액의 73.4%인 6,459억 2천 9백만원이 사업비로 지출될 계획임에 따라 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의 예치 기간 등이 줄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이자수입”은 동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출계획에 따라 별도의 정기 예금에 나눠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합계로, 개별 정기예금은 예치 당시 설정된 거치 기간에 따라 별도의 이자율을 적용받음.
  - 따라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이자수입은 2025년 10월(기금운용 계획안 편성 시점) 당시 예치 기간별 정기예금 이자율과 2026년 세부사업별 지출계획, 2025년 말까지 예측되는 이자수입 등에 기반한 연도별 조성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것임.

### [표-37]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 '예치금'의 정기예금 예치현황<sup>37)38)</sup>

(단위 : 천원)

연번	정기예금 예치기간			이자율*	예치(예정)액	만기이자 (예상)액**	비고
	예치 (예정)월	해지 (예정)월	기간				
1	2025.12.	2026.2.	2개월	2.30%	69,698,355	267,177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2		2026.5.	5개월	2.35%	69,698,355	682,463	
3		2026.8.	8개월	2.39%	69,698,355	1,110,527	
4		2026.11.	11개월	2.39%	69,698,355	1,526,975	
5		2026.12.	12개월	2.44%	65,664,009	1,602,202	학교단위공간혁신
6	2025.11.	2026.1.	2개월	2.30%	103,458,332	396,590	학교시설 환경개선
7		2026.4.	5개월	2.35%	103,458,332	1,013,029	
8		2026.7.	8개월	2.39%	103,458,332	1,648,436	
9		2026.10.	11개월	2.39%	103,458,332	2,266,600	
10	2025.12.	2026.3.	3개월	2.30%	27,708,488	159,324	민간투자 사업상환
11		2026.6.	6개월	2.35%	27,708,488	325,575	
12		2026.9.	9개월	2.39%	27,708,488	496,675	
13		2026.12.	12개월	2.44%	27,708,488	676,087	
합 계					869,124,709	12,171,660	

\* 2025. 10월 현재 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2026년 정기예금 운용 결과(예치기간,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종합할 때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시설법」 제30조제2항 각호가<sup>39)</sup> 규정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역시 2025년 기금 운용 현황과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바, 기금 수입계획 상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총괄관리관(기획조정실장)과 기금운용관

37) 서울시의회 의원요구자료 2913번 회신(교육시설안전과 작성, 2025.11.17. 제출)

38) 해당 표에서 2026년 예치금 예치예정액은 8,691억 2천 5백만원으로,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20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예정)인 8,682억 6천 4백만원보다 8억 6천 1백만원 더 많음. 즉, 표의 예치예정액은 기금운용계획안 상 기금 조성예정액 대비 0.1%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수입 추계 상 차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39) 「교육시설법」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교육행정국장)이 같은 동 기금과 ‘신청사 건립 기금’의 이자 수입 산정 및 관리 방식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자수입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기금의 경우 수입 증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상 이자 수입을 매년 회계적으로 인식하되, 실제 이자 수입은 예산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등을 해지할 때 해당 예금의 전체 이자를 수취하고 있음. (2026년 신청사 건립 기금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 이는 「서울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2025년~2028년)」 [별표 1]을<sup>40)</sup> 근거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예치된 정기예금은 해지 전까지 예치 당시 약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의 이율을 따져 해지하지 않는 것이 수입 증대에 유리하면 해당 상품을 보유하는 상황임.
  - 이는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의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이 9억 9천 6백만원인데 반해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30억 2천 8백만원에 달하는 점은 상술한 이자수입 관리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경우 예치금을 예치한 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당해연도에 예치금을 회수하여 이자수입을 수취하고 있음.
  - 문제는 이자수입 관리에서 발생하는 두 기금 간의 차이가 개별

40)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별표1] 예금에 대한 금리 (금고 약정서 제6조 관련)

※ 금리적용방법

1.~3. 생략

4. 2024. 12. 31. 이전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의 해지시까지의 금리는 예치 당시의 약정금리를 따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 기금 운용계획안의 적정성 검토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임.

- 구체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기금별로 이자수입을 예측하는 방식과 근거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정확한 기금 해지 시점이 불확실하게 됨으로써 해당 연도의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는 문제를 야기함.
  - 다만,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을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조성하였으나 사업부서별로 달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 산정 및 관리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하여 적정한 수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다. 지출계획

- 계속해서 2026년도 교육시설기금의 지출계획은 8,804억 3천 5백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459억 2천 9백만원과 예치금 2,345억 6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2026년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에서 1,212억 6천 1백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에서 4,138억 3천 5백만원, 「민간투자사업상환」에서 1,108억 8천 4백만원, 「예치금」에서 2,345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세부사업별 전년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와

‘학교시설환경개선’ , ‘민간투자사업상환’ 에서는 각각 1,212억 6천 1백만원과 4,138억 3천 5백만원, 21억 9천 2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치금은 6,337억 5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표-38] 2026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감 (C=A-B)
유아및초중등교육							880,435,183	976,907,700	△96,472,517
학교시설여건개선							535,095,244	-	535,095,244
학교시설개선							535,095,244	-	535,095,244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121,260,601	-	121,260,601
그린스마트운영비				210 운영비	6,558,875,000원×1식=	6,558,875	-	6,558,875	
그린스마트 보전금				310 보전금	323,904,000원×1식=	323,904	-	323,904	
그린스마트 건설비				420 건설비	92,562,902,000원×1식=	92,562,902	-	92,562,902	
그린스마트 전출금				620 전출금	21,814,920,000원×1식=	21,814,920	-	21,814,920	
학교시설환경개선							413,834,643	-	413,834,643
냉난방개선				420 건설비	31,840,672,000원×1식=	31,840,672	-	31,840,672	
				620 전출금	8,452,520,000원×1식=	8,452,520	-	8,452,520	
도장공사				420 건설비	6,551,142,000원×1식=	6,551,142	-	6,551,142	
				620 전출금	566,260,000원×1식=	566,260	-	566,260	
바닥개선				420 건설비	21,111,953,000원×1식=	21,111,953	-	21,111,953	
				620 전출금	3,579,297,000원×1식=	3,579,297	-	3,579,297	
방수공사				420 건설비	27,302,639,000원×1식=	27,302,639	-	27,302,639	
				620 전출금	6,284,095,000원×1식=	6,284,095	-	6,284,095	
소방시설개선				420 건설비	2,484,250,000원×1식=	2,484,250	-	2,484,250	
				620 전출금	511,401,000원×1식=	511,401	-	511,401	
외벽개선				420 건설비	14,984,032,000원×1식=	14,984,032	-	14,984,032	
				620 전출금	132,660,000원×1식=	132,660	-	132,660	
외부환경개선				420 건설비	7,040,227,000원×1식=	7,040,227	-	7,040,227	
				620 전출금	1,196,141,000원×1식=	1,196,141	-	1,196,141	
전기시설개선				210 운영비	3,546,261,000원×1식=	3,546,261	-	3,546,261	
				420 건설비	3,892,889,000원×1식=	3,892,889	-	3,892,889	
창호개선				620 전출금	4,455,323,000원×1식=	4,455,323	-	4,455,323	
				420 건설비	17,363,470,000원×1식=	17,363,470	-	17,363,470	
				620 전출금	3,135,940,000원×1식=	3,135,940	-	3,135,940	

(단위 : 천원)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산출기초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감 (C=A-B)		
				화장실개선	420 건설비	46,892,261,000원×1식=	46,892,261	-	46,892,261		
					620 전출금	14,759,884,000원×1식=	14,759,884	-	14,759,884		
				기타시설사업	210 운영비	1,086,191,000원×1식=	1,086,191	-	1,086,191		
					420 건설비	34,953,036,000원×1식=	34,953,036	-	34,953,036		
				안전관리 (드라이버트해소)	620 전출금	16,482,974,000원×1식=	16,482,974	-	16,482,974		
					420 건설비	15,005,707,000원×1식=	15,005,707	-	15,005,707		
					620 전출금	4,305,250,000원×1식=	4,305,250	-	4,305,250		
				안전관리 (샌드위치판넬 제거)	420 건설비	2,458,606,000원×1식=	2,458,606	-	2,458,606		
					620 전출금	3,538,788,000원×1식=	3,538,788	-	3,538,788		
				안전관리 (석면제거)	420 건설비	21,698,305,000원×1식=	21,698,305	-	21,698,305		
					620 전출금	5,000,000,000원×1식=	5,000,000	-	5,000,000		
				안전관리 (정밀점검)	210 운영비	13,822,150,000원×1식=	13,822,150	-	13,822,150		
					420 건설비	3,993,290,000원×1식=	3,993,290	-	3,993,290		
					620 전출금	3,337,135,000원×1식=	3,337,135	-	3,337,135		
				장애인 편의시설	420 건설비	4,122,000,000원×1식=	4,122,000	-	4,122,000		
					620 전출금	6,197,816,000원×1식=	6,197,816	-	6,197,816		
				급식시설개선	420 건설비	34,646,259,000원×1식=	34,646,259	-	34,646,259		
					620 전출금	6,903,819,000원×1식=	6,903,819	-	6,903,819		
				학교공간 재구조화	620 전출금	10,200,000,000원×1식=	10,200,000	-	10,200,000		
교육일반							345,339,939	976,907,700	△631,567,761		
	교육행정일반						-	2,000	△2,000		
	기본경비						-	2,000	△2,000		
		위원회운영					-	2,000	△2,000		
			위원회수당	210 운영비			-	2,000	△2,000		
재무활동							345,339,939	976,905,700	△631,565,76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0,833,952	108,642,177	2,191,775		
	민간투자사업상환						110,833,952	108,642,177	2,191,775		
		BTL운영비	210 운영비	7,874,528,500원×4분기=	31,498,114	30,829,214	668,900				
		BTL원금	510 상환예출	17,183,464,250원×4분기=	68,733,857	64,920,723	3,813,134				
		BTL이자	510 상환예출	2,650,495,250원×4분기=	10,601,981	12,892,240	△2,290,259				
	예치금						234,505,987	868,263,523	△633,757,536		
	예치금						234,505,987	868,263,523	△633,757,536		
		예치금	520 예치금	234,505,987,000원×1식=	234,505,987	868,263,523	△633,757,536				
지출 합계							880,435,183	976,907,700	△96,472,517		

## 1)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 “학교시설여건개선” 중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는 2021년부터 추진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現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시행과 관계된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1,212억 6천 1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형 학교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총 93교에서<sup>41)</sup> 사업이 추진 중임.
  -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부 주도 아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지만, 2023년 교육부가 사업명을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사업대상 선정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에 있어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내용 전반을 개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상기한 배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3년부터 국비가 분담되는 형태로 추진된 노후 학교 공간 개선사업을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로, 2024년 이후 지방비 100% 투입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39]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개편 주요 내용<sup>42)</sup>

구분	‘21~‘23년	‘24~‘28년	비고
사업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늘봄·돌봄 연계
사업 주체	국가·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계속사업으로 노후시설 해소
추진 단위	동 단위	학교 단위	공간재구조화 + 성능개선사업 연계
재원 구조	국비+지방비	지방비	국비 잔액은 계속 지원
사업 방식	재정 + 민자		민자사업은 교육청 자율적 규모 조정

41)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번 [붙임 1] 참조.

42) 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2024.4.), 「2024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추진 계획」, 4쪽.

- 이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관내 학교의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설계비, 건설비, 각종 인증 비용, 공사 시행에 따른 모듈러교실 설치·운영비 등이 편성된 것임.
- 본 사업은 세부적으로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가 추진되는 44교의 사업비 1,212억 1천 1백만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비 2천만원, 공립학교 긴급시설보수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지출계획은 개별 학교의 사업 단계에 맞춰 편성되었고, 「교육 시설법」 제31조제4호와 같은조 제3호 등에서<sup>43)</sup> 정한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바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 2) 학교시설환경개선

### (1) 사업 개요

- “학교시설여건개선” 중 ‘학교시설환경개선’은 서울시 내 공사립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냉난방 개선 등 18개 세부 사업에서 4,138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당초 2025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이 편성·집행되어 왔지만,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재정 여건 악화와 세입 감소(교육부 보통 교부금 등) 및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육시설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원을 확보·집행하고자 하는 것임.

43)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2. (생략)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 6. (생략)

- 우선, 동 사업은 크게 1) 창호와 화장실, 소방시설 등 11개 분야 ‘노후시설개선’, 2)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판넬 등 학교 내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3) 장애 학생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4) ‘급식시설개선’ 그리고 5) 꿈을 담은 교실 등의 추진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로 구성됨.
- 이 중 ‘노후시설개선’은 2023년 2월 수립된 「2024~2026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통합형 학교 단위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냉난방과 창호, 바닥, 방수 등 10개 분야와<sup>44)</sup>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업으로 구성됨.
  - 이에 ‘노후시설개선’에서는 화장실 개선 616억 5천 2백만원 (114건), 전기시설 개선 118억 9천 4백만원(127건), 냉난방 개선 402억 9천 3백만원(148건) 등 2,786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35억 7천 5백만원이 감편성되었음.

[그림-1]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사업 대상 사업<sup>45)</sup>

<b>①냉난방</b> - EHP - GHP	<b>②창호</b> - 외부창호 - 중연창 - 교실출입문	<b>③바닥</b> - 목조후로링 - 비닐계열	<b>④방수</b> - 옥상방수	<b>⑤전기시설</b> - 수배전시설 - 옥외인일간선 - 방송장비	<b>⑥급식시설</b> - 급식실 - 학생식당
<b>⑦화장실</b> - 전면 개선	<b>⑧외벽</b> - 치장벽돌 - 판넬, 석재 - 타일 - 미장(몰타)	<b>⑨소방시설</b> - 기계실 - 옥내소화전 - 전기소방	<b>⑩외부환경</b> - 배수로 - 담장 - 포장	<b>⑪도장</b> - 외부도장 - 내부도장	

44)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11개 분야에는 “급식시설 개선”이 포함되나, 예산 편성시 “급식시설개선”은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 사업과 함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편성되고 있음. 이에 본문에서는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근거한 ‘노후시설개선’ 예산과 ‘급식시설 개선’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것임.

45)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23.2.), 「2024~2026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 4쪽.

- 이어 ‘안전관리’는 내진 보강 사업과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및 석면 제거와 난간 및 균열 보수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학교 시설물 보수 사업을 의미함.
-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샌드위치 판넬 제거에 59억 9천 7백만원 (62건), 드라이비트 해소에 193억 1천 1백만원(44건),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에 211억 5천 3백만원(44건), 석면제거에 266억 9천 8백만원이<sup>46)</sup>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샌드위치판넬제거에서 15억 3천 9백만원, 정밀점검에서 7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드라이비트 해소에서 149억 1천 4백만원, 석면제거에서 44억 2천 7백만원이 감편성되어 총 25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40] 학교시설 주요 위험요인별 개선 목표

분야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석면
내용	2029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 (내진보강사업 완료)	2026년까지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전면 해소	2025년까지 화재취약 샌드위치패널 해소	2027년 학교 석면 전면 제거

- 다음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은 승강기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을 통해 장애가 있는 학교 구성원, 방문자 등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계획안에서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5억 8천 7백만원 줄어든 103억 2천만원(62건)이 편성됨.
- 계속해서 ‘급식시설개선’은 노후 급식시설이나 지하 급식실 해소,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급식실 환기 개선에 303억 9천 8백만원 (190건), 급식시설 개선에 111억 5천 2백만원(20건) 등 전년 최종

46) 동 사업예산은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립학교 석면 제거에 228억 9천 8백만원, 사립학교 석면제거에 38억원이 편성되었음.

예산 대비 94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41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 교실이나 특별실 등을 재구조화한 「꿈을 담은 교실」과 학교 자투리 공간을 학교 구성원의 치유와 휴식 공간 등으로 재편하는 「틈새공간 키우기」로 구성된 사업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102억원이 편성되었음.
- 상술한 내용을 종합할 때 「학교시설환경개선」에 편성된 세부 사업별 내용은 「교육시설법」 제31조에<sup>47)</sup>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2) 주요 쟁점 사항

- 그러나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학교시설환경개선」의 지출 계획은 동 기금의 본래 재원 조성 목적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과 규모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우선, 동 기금운용계획안 중 「학교시설환경개선」에 편성된 재원은 2022년 8월 29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근거로 「민간 투자사업상환」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동 기금으로 전출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8월

47)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29일 당초 편성된 기금전입금 1조 7,423억원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2023년 이후 집행 예정인 BTL사업비 재원 7,470억원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2,210억원만 전입하도록 동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sup>48)</sup> 같은날 제31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음.<sup>49)</sup>

- 문제는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2022년 8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사항과 달리 해당 재원의 상당 부분을 ‘민간 투자사업상환’ 이 아닌 ‘학교시설환경개선’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과 ‘학교시설환경개선’의 지출계획이 그 규모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재정 여건과 2) 학교 구성원 안전 확보 등 편성된 ‘학교시설환경개선’의 시급성·중요성 등이 동시에 인정되어야 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동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편성한 2026년 시설사업비는 총 6,985억 4천 4백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5%, 1,398억 4천 6백 만원 늘어남.
  - 특히, 동 기금에 편성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737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025년 최종예산 대비 1,227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그러나 이는 2025년 추경예산에서 큰 폭으로 증액된 ‘기타시설 사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기타 시설사업을 제외하면 총 113억

48) 제31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22.8.29.) 참조

49) 제31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2022.8.29.) 참조.

1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즉, 2026년 시설사업비는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과 인건비 및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재원을 활용” 하는<sup>50)</sup> 수준을 넘어 시설사업비 증액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함.

[표-41] 2026년 예산안 등의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sup>51)</su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시설사업비	163,449 (698,544)	1.5	558,698	5.2	△395,249 (139,846)	△70.7 (25.0)

[표-42] ‘학교시설환경개선’의 세부사업별 증감내역<sup>52)</sup>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편성액	전년 대비 증감	
		25 본예산 대비	25 최종예산 대비
방수공사	33,586,734	26,517,351	14,397,053
창호개선	20,499,410	13,746,860	10,555,605
급식시설개선	41,550,078	29,344,538	9,499,362
냉난방개선	40,293,192	10,402,972	8,139,748
바닥개선	24,691,250	10,717,319	5,386,845
도장공사	7,117,402	4,719,859	3,825,528
외부환경개선	8,236,368	3,237,605	1,661,509
안전관리(샌드위치판넬제거)	5,997,394	3,858,550	1,538,516
안전관리(정밀점검)	21,152,575	3,322,142	735,935
학교공간재구조화	10,200,000	0	0
외벽개선	15,116,692	6,906,284	-163,971
화장실개선	61,652,145	10,182,879	-1,148,040

50) 서울시교육청이 기금운용계획안 48쪽에 제시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기금 조성 사유임.

5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7쪽.

52)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62쪽의 [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구분	예산편성액	전년 대비 증감	
		25 본예산 대비	25 최종예산 대비
장애인편의시설	10,319,816	637,816	-1,586,712
전기시설개선	11,894,473	1,357,088	-2,357,572
안전관리 (석면제거)	26,698,305	9,167,905	-4,426,538
안전관리 (드라이비트해소)	19,310,957	9,188,521	-14,914,340
소방시설개선	2,995,651	-7,903,178	-19,831,251
기타시설사업	52,522,201	-61,610,092	-134,040,634
<b>소 계</b>	<b>413,834,643</b>	<b>73,794,419</b>	<b>-122,728,957</b>

-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한 재정여건 악화 역시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기초해볼 때 동 기금의 기금 조성액 (2025년말 기준)의 74.4%인 6,459억 2천 9백만원을 일시에 집행 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의문임.
- 서울시교육청은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서 해당 기간 중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수입이 연평균 3.3%, 경상지출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사업비는 연평균 6.1% 수준에서 늘어나는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음.

[표-43] 서울시교육청 중기 재정수입 전망(총괄)<sup>53)</sup>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계	66,126,918	13,239,644	12,802,748	12,824,013	13,361,437	13,899,076	1.2
교육비특별회계	63,851,060	11,947,078	12,435,337	12,684,857	13,167,417	13,616,371	3.3
이전수입	62,064,816	11,398,132	12,126,169	12,375,586	12,858,041	13,306,888	3.9
자체수입	507,624	101,318	101,420	101,523	101,628	101,735	0.1
차입	0	0	0	0	0	0	0.0
기타	998,620	167,628	207,748	207,748	207,748	207,748	5.5
내부거래	280,000	280,000	0	0	0	0	△100.0
기금수입	2,275,858	1,292,566	367,411	139,156	194,020	282,705	△31.6

53)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23쪽.

## [표-44] 서울시교육청 성질별 중기 재정지출 전망(교육비특별회계)<sup>54)</sup>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계(교특회계+기금)	66,126,918	13,239,644	12,802,748	12,824,013	13,361,437	13,899,076	1.2
교특회계	경상지출	45,083,175	8,623,225	8,822,849	9,011,191	9,216,690	2.2
	사업비	18,767,885	3,323,853	3,612,488	3,673,666	3,950,727	6.1

- 그런데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의 사업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2026년 대비 2030년 “시설사업비”는 2,882억 7천 6백만원이 감소하고, 이 중 ‘학교교육환경개선’에서 2,260억 8천 6백만원이, ‘학교신증설’에서 505억 8천 8백만원이 줄어 각각 연평균 6.4%, 23.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더욱이 ‘학교교육환경개선’은 2028년에 2026년 예산(9,747억 8천 3백만원) 대비 55.9% 수준인 5,445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은 향후 3년以内 사업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 따라서 동 기금의 지출계획이 2026년 중 기금조성액 대부분을 소진하기보다 적정 수준에서 기금조성액을 보존하여 2027년 이후 시설사업비 감소 등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은 2026년 대비 2030년까지 “교육사업비”를 3,108억 6천 2백만원, “교육행정지원”에서 2,944억 4천 4백만원 증액하며, “교육사업비” 중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교육기반마련’ 1,117억 8천 만원, 학교급식 등 ‘학생건강지원사업’에서 1,169억 8천 3백 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중기 지출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시설사업비”를 편성

54) 위의 자료, 28쪽의 표를 정리한 것임.

하여 디벗 사업을 비롯한 “교육사업비” 와 일반 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지원” 을 증액하려는 것임을 의미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여건 변화를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동 기금에 편성한 BTL 사업비 7,470억원 중 ‘학교시설환경개선’에 4,138억 3천 5백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짐.

- 그러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예산의 편성 취지와 당위성에 관해 보다 면밀히 소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45] 서울시교육청 중기 사업비 지출 전망<sup>55)</sup>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6년 (A)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B)	사업비 차이(B-A)	연평균 증가율
계	19,652,956	3,907,383	3,863,257	3,690,254	3,967,649	4,224,413	317,030	2.0
교육사업비	13,385,756	2,562,688	2,588,409	2,611,799	2,749,310	2,873,550	310,862	2.9
교수학습활동지원	686,399	140,701	138,009	134,541	136,027	137,121	-3,580	△0.6
누리과정교육비	2,672,891	533,204	513,043	521,248	540,537	564,859	31,655	1.5
유아교육지원	210,816	42,676	42,581	41,512	41,920	42,127	-549	△0.3
방과후학교운영	60,061	13,131	12,545	11,985	11,453	10,947	-2,184	△4.4
늘봄학교운영	975,081	163,186	163,573	204,337	216,182	227,803	64,617	8.7
디지털교육기반마련	839,815	115,492	177,988	124,881	194,182	227,272	111,780	18.4
특수교육진흥	172,308	34,309	34,352	34,426	34,557	34,664	355	0.3
직업계고교육지원	201,355	37,252	35,086	37,484	43,963	47,570	10,318	6.3
학생복지지원	1,419,026	287,215	289,652	286,867	280,274	275,018	-12,197	△1.1
학생건강지원	5,205,400	992,555	1,007,407	1,034,021	1,061,879	1,109,538	116,983	2.8
기타교육사업비	942,604	202,967	174,173	180,497	188,336	196,631	-6,336	△0.8
시설사업비	4,111,735	1,073,395	981,514	631,218	640,489	785,119	-288,276	△7.5
학교신·증설	296,050	76,346	95,392	69,420	29,134	25,758	-50,588	△23.8
학교교육환경개선	3,732,687	974,783	863,581	544,517	601,109	748,697	-226,086	△6.4
행정기관시설유지	82,998	22,266	22,541	17,281	10,246	10,664	-11,602	△16.8
교육행정지원	2,155,465	271,300	293,334	447,237	577,850	565,744	294,444	20.2

55) 위의 자료, 31쪽의 표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한 것임.

- 여기에 더해 ‘학교시설환경개선’의 세부 편성 내역 중 일부는 내용상 중요성, 시급성 등의 차원에서 시의회 심의 사항을 변경하면서 까지 추진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됨.
- ‘학교시설환경개선’ 중 102억원이 편성된 ‘학교공간 재구조화’는 학교 특성과 학교 구성원 의견 등을 반영한 특화 공간을 일반교실, 도서실, 특별교실, 학교 외부경계 등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최종 예산과 동일한 102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5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꿈을 담은 교실, 학습공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꿈을 담은 교실’과 학교 특색을 살린 2실 미만의 자투리 공간에 녹색공간, 독서공간, 휴식 및 놀이공간 등을 구축하는 ‘틈새공간 키우기’로 나뉨.

[표-46] 2025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세부 분야<sup>56)</sup>

세부사업	세부분야	사업내용	개선 공간 예시
꿈을 담은 교실	꿈을 담은 교실	학생의 학교 적응 및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공간, 다변화하는 교육방식과 학생 성장 발달 및 활동 등을 고려한 학습공간 제공	일반교실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학생 독서문화 권장 및 휴식·소규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공간으로서의 학교 도서관 구축	도서실
	다양한 모델 개발	학교별 특성화 수업 및 교과 운영을 위한 특별교실, 야외공간, 치유정원 등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특별교실 등 야외공간
		특수학교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공간 조성	특수학급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다목적실, 가변형 교실, 가변형 공용공간	특별교실 등 다양한 공간
	학교 경계 디자인	학부모를 위한 학교 경계 대기·휴게공간 조성 및 다양한 형태의 학교 외부공간 재구조화 추진	학교 외부 경계
틈새공간 키우기	녹색공간, 독서공간, 휴식·놀이공간, 실외공간 등 학교의 특색을 살린 자투리 공간 조성	'2실 미만' 틈새공간	

- 해당 사업은 학교 틈새 공간이나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56)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025.3.), 2025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기본계획(꿈을 담은 교실·틈새공간 키우기), 4쪽.

다양한 교육공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나 과대·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급이나 특별교실과 같이 교육 과정 운영을 이유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

- 더욱이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연차별 「꿈담교실 백서」나 2025년 사업계획안에서 제시된 예시(사례)에 비추어볼 때 노후 학교시설 개선, 석면·드라이비트 등 위해요소 제거 등에 비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이유도 불분명함.
- 해당 자료에서 제시한 꿈담교실은 궁극적으로 건축 전문가의 참여 하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실이나 복도 등 학교 공간의 역할과 기능, 디자인을 입체화·다양화함에 그 핵심이 있기 때문임.

[그림-2] 2023년 꿈담교실 구축 사례<sup>57)</sup>

서울덕암초등학교 일반교실(197p)	언남중학교 프로젝트교실(361p)
	
서울광진학교 신체활동실(397p)	서울구암초등학교 학교경계디자인(405p)
 <p>꿈놀터(신체활동실)의 높은 천장고를 활용한 임벽이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운동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p>	 <p>비탈진 경사로가 풀밭식 계단으로 바뀌어 비오는 날에도 안전하고 등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p>

57) 서울시교육청(2024.8.), 「학교, 고운 꿈을 담다 :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 혁신 사업 백서」에서 발췌  
(개별 사진을 발췌한 페이지는 표 안에 별도로 기재)

- 그러나 동 사업은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취지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시설사업비 편성”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공간 재구조화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지가 불투명한바, 동 사업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한편, ‘학교시설환경개선’의 사업별 편성 내용이 「2024~2026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파악된 관내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수요와 비교했을 때 화장실 개선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편성된 측면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4~2026년 중 교육환경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장실 개선’은 동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역을 반영하더라도 소요액 기준 전체 물량의 59%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 창호, 바닥, 도장 등 5개 분야 사업은 전체 소요액의 60% 이상이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쾌적한 수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냉난방 개선 역시 62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못함.
- 다만,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 편성의 문제는 “학교별로 단위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 하는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음.
  - 즉, 해당 사업이 학교 부담 경감 및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학교별로 특정 시기(해당연도)에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내부 계획상 정하고 있기에 특정 사업 분야의 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임.

## [표-47] 2024~2026년 교육환경개선 사업별 예산 편성(안)<sup>58)</sup>

(단위 : 억원)

번호	구분	2024~2026 총소요액 (A)		2024~2025 예산액 (B)		2026 본예산(안) (C)		향후 소요액 (D=A-B-C)	
1	냉난방	1,040	100%	683	66%	295	28%	62	6%
2	방수	495	100%	262	53%	215	43%	18	4%
3	소방	200	100%	200	100%	-	-	-	-
4	전기	136	100%	85	63%	13	10%	38	28%
5	화장실	3,740	100%	1,003	27%	524	14%	2,213	59%
6	급식시설	313	100%	51	16%	61	19%	201	64%
7	창호	852	100%	169	20%	99	12%	584	69%
8	바닥	1,137	100%	245	22%	207	18%	685	60%
9	도장	298	100%	62	21%	57	19%	179	60%
10	외벽	752	100%	188	25%	55	7%	509	68%
11	외부환경	282	100%	93	33%	61	22%	128	45%
계		9,245	100%	3,041	33%	1,587	17%	4,617	50%

주) 해당 표에서 "2026 본예산(안)"은 동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액을 의미함.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소방시설개선 예산을 2026년 예산 편성 이전에 모두 확보했듯이 방수공사, 냉난방 개선 등과 같이 교육 안전 확보나 학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더욱이 '학교시설환경개선' 중 '안전관리(석면제거)', '급식시설 개선' 중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역시 개별 사업 계획에 근거하여 조속한 해소가 요구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
  -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은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폐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2025년 말 기준 대상학교 1,002교 중 189교만 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58) 서울시교육청 내부 자료(교육시설안전과 작성, 2025.11.10. 제출)

- 따라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학교시설환경개선’에 편성된 세부 사업별 예산 조정을 통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사업 물량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표-48]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추진 현황<sup>59)</sup>

(단위 : 교, 2025.9. 기준)

관내 환기시설 개선 대상학교수	관내 환기시설 개선 완료 학교수	비고
1,002	117	2025년 72교 추진예정

주) '대상학교 선정기준: 2022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발행 이전에 개선한 학교

※ 증·개축 예정학교, 수업료자율학교, 비조리교, 소규모 급식실(100㎡ 미만) 제외

### 3) 민간투자사업상환

- “재무활동” 중 ‘민간투자사업상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BTL 방식을<sup>60)</sup> 통해 신개축이 추진된 관내 141교의<sup>61)</sup> 시설에 대해 BTL 원금(임대료)과 이자, 운영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 동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21억 9천 2백만원 증가한 1,108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됨.

59) 2025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5-2번 [붙임 1] 참조.

60)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함.

(자료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2016.10.),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관리·운영 매뉴얼」, 1쪽.)

61) 2005~2009년 BTL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학교 현황(사업유형별)

(단위: 교, %)

사업유형	학교수 (비율)
신축	33교 (23.4%)
개축	56교 (39.7%)
소규모(체육관)	52교 (36.9%)
전체	141교 (100%)

(자료 :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6쪽.)

- 동 사업은 서울시의회가 2022년 8월 29일 의결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sup>62)</sup> 근거하여 2023년 이후 집행 예정인 BTL 사업비 7,470억원을 교육시설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편성된 것임.
- 동 사업의 지출계획은 개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서에 따라 2026년 분기별로 지출 예정인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교육시설법」 제31조제3호에서<sup>63)</sup> 정한 기금 사용 용도에도 부합하는바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4) 예치금

- 한편, ‘재무활동’에 편성된 예치금 2,345억 6백만원은 이자수입, 지출계획을 초과하는 기금조성액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임.
  - 관련하여 교육부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수입 증대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으로 계상” 하도록<sup>64)</sup> 정하고 있음.

---

6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1-00032, 2022.7.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63) 「교육시설법」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2. (생략)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 6. (생략)

64) 교육부(2025.8.),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41쪽.

## [표-4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sup>65)</sup>

(단위 : 천원)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비용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1,410,867,426	1,286,252,767	122,638,363	1,976,296	1,176,361,439	1,176,356,799	4,640	234,505,987

주) 2016~2024년의 조성액 및 집행액은 결산, 2025~2026년 조성액 및 집행액은 계획 기준임.

-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예치금은 2025년 말까지 예측되는 기금조성액 규모, 2026년 동 기금의 수입·지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65)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56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중 합계 금액만 편집하여 삽입하였음.

## 신청사 건립기금

### 가. 기금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은 「지방기금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될 예정인<sup>66)</sup> 기금임.
- 동 기금의 재원으로 건립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는 2026년 2월까지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이전 완료를 목표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舊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연면적 기준 39,937m<sup>2</sup>)로 조성 중인 공공청사임.

[표-50] 신청사 건립 사업 개요<sup>67)</sup>

구분	내용	
위치	용산구 두텁바위로 27(구 수도여고 부지)	
사업기간	2022. 1. 1.~ 2026. 2.(이전예정)	
총사업비	금 1,767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사업개요		
주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3,214.20m <sup>2</sup>	
연면적	39,937m <sup>2</sup> (지상 21,109.26m <sup>2</sup> , 지하 18,827.74m <sup>2</sup> )	
건폐율	50.17% (법정 60%, 건축면적 6,629.52m <sup>2</sup> )	
용적률	159.75% (법정 19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1,109.26m <sup>2</sup> )	
층수(최고높이)	지하3층, 지상6층 (36.35m)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PC구조, 철골트러스 구조	
주차대수	255대 (법정 156대)	
조경면적	3,973.10m <sup>2</sup> (법정 30% / 설계 30.06%)	

6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7) 2025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번 참조.

- 한편, 신청사 건립공사는 골조 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2025년 11월 1일 기준 공정률이 96%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sup>68)</sup> 2025년 12월 준공(사용승인)과 2026년 1~2월 중 청사 이전 등을 목표로 인테리어와 조경공사 등이 추진 중에 있음.

[표-51] 신청사 건립 사업 향후 일정<sup>69)</sup>

일정	'25. 1~'25. 8.	'25. 8~'25. 10.	'25.10~'25. 11.	'25. 12.	'26. 1.~'26. 2.
단계	골조공사	외장·설비공사	인테리어·조경공사	준공(사용승인)	청사 이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이전 협의체 운영</li> <li>▶ 스마트오피스 구축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용역 계약 발주</li> <li>▶ 공간 관리 운영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검사 및 설비 시험 가동</li> <li>▶ 스마트오피스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출고·설치</li> <li>▶ 스마트오피스 사용자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추진 및 사무 환경 안정화</li> <li>▶ 스마트오피스 개통</li> </ul>

- 이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13조제2항에<sup>70)</sup>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sup>71)</sup> 거친 뒤 같은법 제8조제2항에<sup>72)</sup> 따라 2026년 기금 운용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것임.
- 2026년도 동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억 9천 6백만원과 이자수입 30억 2천 8백만원 등 40억 2천 4백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기관운영(비용자성사업비) 9억 9천 6백만원과 재무활동(예치금) 30억 2천 8백만원 등 40억 2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68) 서울시교육청 신청사건립누리집, 공정현황(2025.11.1. 기준일자)

<https://www.sen.go.kr/sen/newsen2026/index.do> (검색일 2025.11.12.)

69) 2025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5번 참조.

70)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3. (생략)

71) 2025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회의록 첨부) (서울시교육청 청 사이전추진단-5920, 2025.9.30.)

7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표-52] 기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26년 수입액(A)	'25년 수입액(B)	증 감 (C=A-B)	지출항목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 감 (C=A-B)
합 계	4,023,597	129,573,030	△125,549,433	합 계	4,023,597	129,573,030	△125,549,433
교특회계 전입금	-	7,800,000	△7,800,000	기관운영 (비용자성 사업비)	995,597	128,577,433	△127,581,836
예치금 회수	995,597	114,625,979	△113,630,382	재무활동 (예치금)	3,028,000	995,597	2,032,403
이자수입	3,028,000	7,147,051	△4,119,051				

### I. 수입계획

- 2026년도 해당 기금의 수입계획은 40억 2천 4백만원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에 따른 수입액 9억 9천 6백만원과 이자수입 30억 2천 8백만원을 합한 것임.

## [표-53] 2026년 신청사 건립 기금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6년 수입액(A)	'25년 수입액(B)	증감 (C=A-B)
[50000]	내부거래			-	7,800,000	△7,800,000
	[51000]	전입금		-	7,800,000	△7,800,000
		[51100]	전입금	-	7,800,000	△7,800,000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7,800,000	△7,800,000
[40000]	기타			995,597	114,625,979	△113,630,382
	[42000]	예치금회수		995,597	114,625,979	△113,630,382
		[42100]	예치금회수	995,597	114,625,979	△113,630,382
			[42101] 예치금회수	995,597	114,625,979	△113,630,382
[20000]	자체수입			3,028,000	7,147,051	△4,119,051
	[24000]	이자수입		3,028,000	7,147,051	△4,119,051
		[24100]	이자수입	3,028,000	7,147,051	△4,119,051
			[24101] 예금이자수입	3,028,000	7,147,051	△4,119,051
수입 합계				4,023,597	129,573,030	△125,549,433

- 2026년 동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 이자수입과 전년도 예치금만으로 수입계획이 편성됨.
  - 관련하여 전년도 예치금으로 편성된 9억 9천 6백만원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2025년 발생한 낙찰 차액, 공사 일정을 고려한 사업비 조정 등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음.
- 또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이자수입은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기금조성액 관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정기예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자액을 토대로 계상한 것임.

[표-54] 신청사 건립 기금의 정기예금 예치현황<sup>73)</sup>

(2025.9.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예치일	만기일	이율(%)	예치액
정기예금	2022-12-14	2023-03-14	3.67	19,200,000
정기예금	2023-01-12	2023-04-12	4.00	10,108,882
정기예금	2023-01-12	2023-04-12	4.00	20,912,700
정기예금	2023-01-12	2023-04-12	4.00	11,200,000
정기예금	2023-03-02	2023-06-12	4.00	10,000,000
정기예금	2024-03-08	2024-09-08	3.67	15,700,000
계				87,121,582

- 동 기금은 수입 증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을 매년 회계적으로 인식하되, 실제 이자수입은 예산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등을 해지할 때 해당 예금의 전체 이자를 수취하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서울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2025년~2028년)」

73)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2025.9.), 사업비 초과 기금조성예상에 따른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방안 검토(안), [붙임 1] 참조.

[별표 1]을<sup>74)</sup> 근거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예치된 정기예금은 예치 당시의 약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즉, 서울시교육청은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에 대해 이율을 따져 해당 상품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자액을 수취하지 않고 예치기간이 도래한 정기예금을 지출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임.
- 그런데 동 기금이 공기 자연 등의 영향으로 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짐에 따라 2025년 계획 대비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오염토 처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기금 집행이 지연되고, 고이율 상품을 중심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 최종 계획 대비 이자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sup>75)</sup>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기금 조성 시점인 2016년부터 2025년 8월 까지 기금운용계획상의 누적된 기금조성액(이자수입 포함)은 1,715 억원이고,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남은 정기예금에서 예측되는 이자수입은 82억원으로 총 기금조성예상액은 1,797억원임.
-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총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은 1,767억원으로, 2026년에 수취하는 이자가 당초 예측보다 증가함에 따라 실제 기금조성액이 신청사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30억원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임.

74)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별표1] 예금에 대한 금리 (금고 약정서 제6조 관련)  
※ 금리적용방법

1.~3. 생략

4. 2024. 12. 31. 이전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의 해지시까지의 금리는 예치 당시의 약정금리를 따름.

75)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2025.9.), 사업비 초과 기금조성예상에 따른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방안 검토(안), 6쪽.

## [표-55] 신청사 건립기금 향후 이자 발생액 추산<sup>76)</sup>

(단위 : 억원)

기금조성액 (A)	수입액('16~'25.8)			이자발생 예상액 (E)	기금조성예상액 (F=D+E)	추가조성액 (G=F-A)
	교부금 등 (B)	이자수입 (C)	계 (D=B+C)			
1,767	1,625	90	1,715	82	1,797	30

## [표-56] 신청사 건립 사업 총사업비 규모

(단위 : 억원)

기존 수입액 ('24.8.23. 현재) (A)	추가 재원(B)			총 조성액 (C=B+A)	비고
	2025년 교특 전입금(a)	이자 수입(b)	합계(c=a+b)		
1,610	78	79	157	1,767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비 변경안(청사이전추진단-3629, 2024. 8. 27.)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초과 이자수입을 동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이자수입으로 상계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상술한 내용을 종합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에<sup>77)</sup> 따른 기금 조성 재원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계획의 내용 및 규모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76) (청사이전추진단)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2906번)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7185, 2025.11.14.)

77)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다. 지출계획

- 동 기금의 2026년도 지출계획은 총 40억 2천 4백만원으로, 사무 레이아웃을 위한 자산 취득비 4억원, 시설부대비 3억 9천 6백만원, 이사비 2억원과 예치금 30억 2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2026년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기관운영(비용자성 사업비) 부문에서 1,275억 8천 2백만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20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표-57] 2026년 신청사 건립 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감 (A-B)
[050] 교육							4,023,597	129,573,030	△125,549,433
	[054] 교육일반						4,023,597	129,573,030	△125,549,433
		[02] 기관운영					995,597	128,577,433	△127,581,836
			[02] 교육행정기관시설				995,597	128,577,433	△127,581,836
				[01] 기관시설유지관리			995,597	128,577,433	△127,581,836
					신청사 건립		995,597	128,577,433	△127,581,836
					설계비	420 건설비	1	58,118	△58,117
					시설비	420 건설비	1	113,065,560	△113,065,559
					감리비	420 건설비	1	3,692,268	△3,692,267
					시설부대비	420 건설비	395,590	1,150,000	△754,410
					이사비	210 운영비	200,000	385,000	△185,000
					미술작품 설치비	430 유형자산	-	677,000	△677,000
					ICT시스템 운영	210 운영비	1	913,711	△913,710
					전산망시설비	420 건설비	1	435,000	△434,999
					ICT시스템HW	430 유형자산	1	3,581,795	△3,581,794
					ICT시스템SW	440 무형자산	1	1,642,620	△1,642,619
					사무레이아웃	430 유형자산	400,000	2,700,000	△2,300,000
					급식 기구	430 유형자산	-	276,361	△276,361
	[03] 재무활동						3,028,000	995,597	2,032,403
		[05] 예치금					3,028,000	995,597	2,032,403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사업내역	목	'26년 지출액(A)	'25년 지출액(B)	증감 (A-B)
					[01]예치금		3,028,000	995,597	2,032,403
					예치금	520 예치금	3,028,000	995,597	2,032,403
지출 합계							4,023,597	129,573,030	△125,549,433

- 이 중 ‘기관운영’에 책정된 시설부대비와 이사비, 사무레이아웃은 2026년 1~2월에 진행될 청사 이전과 연계해 요구되는 사무 가구 등의 구입, 시설분담금 납부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출액을 지출계획에 편성한 것임.

#### [표-58]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관운영’ 편성 세부 내역<sup>78)</sup>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지출계획액	비고
시설부대비	시설분담금, 조달수수료 등	395,590	
이사비	소모품성 물품 구입, 청소 및 물품 재배치 대비 등	200,000	
사무레이아웃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 추가 소요 물품 구입 등	400,000	
계			995,590

- 한편, ‘재무활동’에 편성된 예치금 30억 2천 8백만원은 이자 수입 증대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조성된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됨.

#### [표-59]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sup>79)</sup>

(단위 : 천원)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계(b)	비융자성 사업비	
179,728,000	162,506,075	17,221,925	176,700,000	176,700,000	3,028,000

주) 2016~2024년의 조성액 및 집행액은 결산, 2025~2026년 조성액 및 집행액은 계획 기준임.

78) (청사이전추진단)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2906번)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7185, 2025.11.14.)

79)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중 합계 금액만 편집하여 삽입하였음.

- 예치금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수입 증대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으로 계상” 하도록<sup>80)</sup>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치금으로 편성된 30억 2천 8백만원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과 같이 예치금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할 때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함은 물론, 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각호에서<sup>81)</sup> 정한 사용 용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80) 교육부(2025.8.),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41쪽.

8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